

국토교통부령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23.4.18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검사방법, 검사기관 지정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교육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용기 검사에 관한 사항 및 면제대상 신설(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절차 및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 현재 위험물 용기 검사는 철도운영자의 내규에 따라 검사(법 제44조제2항 근거)

나.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제21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설(제22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제24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안전법」 제44조”를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3”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험물 용기 검사 등) ①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이하 “위험물용기”라 한다.)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주기에 따라 위험물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8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안전법」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검사결과 용기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가

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검사 계획서

2. 검사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탱크용량, 설계압력, 시험압력 등),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8호에 해당하는 사고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용기의 주요 부품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검사 대상 용기의 종류 및 수량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안전관리계획

4. 검사에 사용될 장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기 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서 정한 용기등의 검사 방법을 따른다.

1. 외관검사 : 용기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주름 등의 발생 여부, 부착 부품의 적정설치 여부 및 가공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2. 용기 두께 검사 : 용기의 두께가 별표 2에서 정한 설계압력, 허용응

력, 용접작업 검사방법 계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계산된 값이 6 mm 이하이면 6mm로 한다.) 이상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3. 수압시험 검사 : 용기에 물이나 공기 등의 기체를 이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압력을 10분간 가하여 누설이나 팽창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4.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 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를 통하여 용기의 취약개소의 균열 등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⑤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의 면제) 위험물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별지 도식의 표찰”을 “표찰”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철도안전법」 제44

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관
3.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기관
4.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②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3. 검사업무규정 및 기관운영규정
4. 운영계획서
5. 검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표3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기관명·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7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① 「철도안전법」 제44조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의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철도안전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한 교육생에게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3. 교육훈련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4.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전부를 면제한다.

1. 「철도안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종사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
5.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물안전운송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제23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철도안전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운영규정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3. 위험물취급 안전교육 계획서
4. 교육전담요원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5.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② 「철도안전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그 기관명·대표자·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4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철도안전법」 제44조의3제6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의 제목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2조 관련)”을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및 표찰 (제2조 및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도식을 삭제한다.

별표 1에 제1호, 제2호를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1] <개정>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및 표찰(제2조 및 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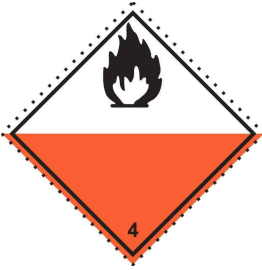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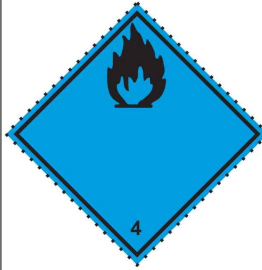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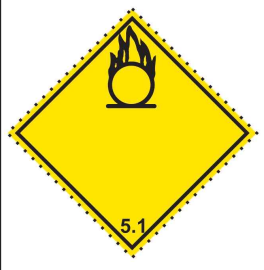
1.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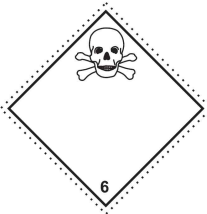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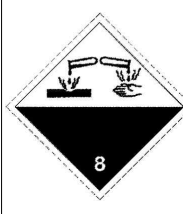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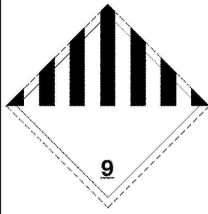
제1류 화약류 - 제1.1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 - 제1.2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 - 제1.3급: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제1.4급: 폭발위험성과 분사위험성이 낮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폭발위험성이 포장에 국한되거나 분사위험성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것) - 제1.5급: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둔감한 폭발성 물질(통상의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의 경우에도 폭발하기 어려운 물질) - 제1.6급: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둔감한 폭발성 제품(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폭발성 제품)
제2류 가스류 - 제2.1급: 인화성가스 - 제2.2급: 비인화성·비독성가스 - 제2.3급: 독성가스
제3류 인화성액체류
제4류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제4.1급: 가연성 고체, 자기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화약류 - 제4.2급: 자연 발화성 물질 - 제4.3급: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제5류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제5.1급: 산화성물질 - 제5.2급: 유기과산화물
제6류 독물 및 전염성 물질 - 제6.1급: 독물 - 제6.2급: 전염성 물질
제7류 방사능 물질
제8류 부식성 물질
제9류 철도운송 중 나타나는 유해성이 제1류부터 제8류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제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나 제품

2. 위험물 분류별 표찰

제1류									
제1.1, 1.2, 1.3급		제1.4급		제1.5급		제1.6급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그림	흑 색								
숫자	흑 색	숫자	흑 색	숫자	흑 색	숫자	흑 색		
문자	흑 색	문자	흑 색	문자	흑 색	문자	흑 색		
★★는 등급을,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제2류								제3류	
제2.1급		제2.2급		제2.3급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바탕	적 색	바탕	초록색	바탕	백 색	바탕	적 색		
그림	흑색 또는 백색	그림	흑색 또는 백색	그림	흑 색	그림	흑색 또는 백색		
숫자	흑색 또는 백색	숫자	흑색 또는 백색	숫자	흑 색	숫자	흑색 또는 백색		

제4류						제5류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바탕	적 색	바탕	위	바탕	청 색	바탕	노랑색
		아래	백 색				
띠	백 색	그림		그림	흑색 또는 백색	그림	흑 색
숫자	흑 색	숫자		숫자	흑색 또는 백색	숫자	흑 색

제5류		제6류				제8류	제9류
제5.2급		제6.1급		제6.2급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구분	색 상
바탕	위	바탕	백 색	바탕	백 색	바탕	백 색
	아래						
그림		그림	흑 색	그림	흑 색	그림	흑 색
숫자	흑색	숫자	흑 색	숫자	흑 색	숫자	흑 색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2]

위험물 용기 검사 기준(제6조의2제3항 관련)

1. 적용

이 기준은 「철도위험물운송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위험물 용기의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철도화물운송협약(SMGS) 부속서2」의 6.8,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및 KS D 0213,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검사주기

위험물 용기의 종류	검사주기
유류를 운송하는 용기	최초, 이후 4년 또는 주행거리가 160,000km 도래하는 날
황산을 운송하는 용기	최초, 이후 3년 또는 주행거리가 160,000km 도래하는 날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다.

비고 :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위험물 운송용기가 설치된 차량의 정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비시까지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산정한다.

3. 검사절차 및 합격기준

위험물 용기의 검사절차는 외관검사, 용기 두께 검사, 수압검사, 비파괴 검사의 순서로 실시하며 검사결과 모두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외관검사 : 용기에 부착된 부품, 모재 및 용접 이음매에 대하여 가능한 양면으로 육안으로 검사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의 외관상 불량부위가 없고,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 밸브 등의 작동이 원활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나. 용기두께 검사 : 두께검사 결과 아래 1)의 방법으로 계산된 값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1) 계산값 : 다음 두 값중 최대값을 두께 계산값으로 한다. 다만, 계산값이 6mm 이하이면 6mm로 한다.

$$e = \frac{P_{\text{시험압력}} D}{2\sigma}, \quad e = \frac{P_{\text{설계압력}} D}{2\sigma\lambda}$$

여기서:

e - 최소 탱크 벽 두께, mm

$P_{\text{시험압력}}$ - 시험 압력, MPa
$P_{\text{설계압력}}$ - 설계 압력, MPa
D - 탱크 내부 직경, mm
σ - 허용 응력, MPa
λ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철도화물운송협약(SMGS) 부속서2」의 6.8.2.1.2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다. 수압검사 : 아래 시험압력을 10분간 가하여 누설이나 팽창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1) 시험압력 : 설계 압력에 따라 다르며, 최소한 아래 표시된 값과 동일해야 한다.

설계 압력(bar)	시험 압력(bar)
1.5 미만	설계압력
1.5	1.5
2.65	2.65
4	4
10	4
15	4
21	10

비고 : 수압시험은 특별한 경우와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액체나 가스를 사용한 압력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라. 비파괴 검사 : 화차에 고정되는 용기의 용접 부위 등 취약개소(부식성 위험물의 경우에는 영차시 수위부근 및 공차시 수위 부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분탐상검사, 방사선 투과검사,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 중 하나로 수행한다. 다만,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을 수리한 부분은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분탐상검사는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KS D0213)에 따라 실시하여 표면 등에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자분탐상검사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한 탐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방사선투과검사는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KS B 0845) 부속서1의 A 급을 적용하고, 그 결과가 아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1) 균열·용입부족 및 융합부족이 없어야 하고 언더컷의 깊이가 수직이음에서는 0.4mm, 수평이음에서는 0.8mm 이내일 것

(2) 기공과 슬래그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함에 대해서는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KS B 0845)의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할 것, 다만, 고장력강판을 사용하는 모든 판의 수직이음과 두께 25mm를 초과하는 연강판의 수직이음에 대해서는 2류 이상을 합격

으로 한다.

3) 초음파 탐상검사는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검사」(KS B 0896)에 따라 실시하여, 그 결과 균열이 없고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1)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다음 표 1의 A, B 또는 C의 수치로 구분되는 결함지시길이의와 다음 표 2의 최대에코높이의 영역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평가할 때 다음 각목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동일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지시 상호간의 간격이 어느 하나의 결함지시길이 이하일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길이의 합에 결함지시 상호간의 간격을 더한 것을 결함지시길이라고 할 것

나) 가목에 의해서 얻어진 결함지시길이 및 1개 결함의 결함지시길이를 2 방향에서 탐상하여 다른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큰 쪽의 수치를 결함지시길이라고 할 것

표1. 결함지시길이의 구분

결함지시길이의 구분 모재의 두께(단위 mm)	A	B	C
6이상 18이하	6	9	18
18초과	t/3	t/2	t

표2.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길이 최대에코높이	A이하	A초과 B이하	B초과 C이하	C초과
Ⅲ영역	1점	2점	3점	4점
Ⅳ영역	2점	3점	4점	4점

(2) 2)의 방사선투과시험에 적용되는 3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제1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mm당 평가점의 합이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3) 2)의 방사선투과시험에 적용되는 2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제1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2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mm당 평가점의 합이 4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검사기관의 인력 구비 요건(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임 검사 원	1)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3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6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검사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임 검사 원	1)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검사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검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검 사 원	1)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철도,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비고

1. "철도차량,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또는 고압가스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 운영자·철도시설관리기관·철도연구기관·철도관련 검사기관·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관련 검사기관·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위험물 관련 용기 또는 부품의 설계·제작·검사·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관련분야"란 철도·기계·전기·전자·산업(물류)·위험물·품질관리 분야를 말한다.
3. 자격 및 학력 취득 전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한다.

2. 검사기관의 인력 보유 기준

가. 책임검사원은 1인 이상을 갖출 것

나. 검사원 이상(책임, 선임 검사원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3인 이상을 갖출 것

3. 검사기관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 기구의 조직 및 인원

나. 검사 인력의 업무 및 책임

다. 검사 체계 및 절차

라.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 검사 인력의 교육훈련

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사. 검사 장비의 운용·관리

아. 수수료의 징수 기준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검사 설비 및 장비 기준

가. 각종 검사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다만, 검사 설비 및 장비는 검사 업무 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검사 설비 및 계측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검사 설비 및 장비는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수단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 검사 설비 및 장비의 용도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설비 및 장비명	사용 용도	확보 기준
1	강재부식도 측정기	구조체 부식량 측정	보유 또는 활용
2	자분탐상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3	초음파탐상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4	방사선투과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5	변위측정기	치수 검사	보유 또는 활용
6	온도계측장비	온도 측정	보유
7	3차원 측정기	용기 치수측정	보유 또는 활용
8	구조해석 프로그램	용기 구조해석	보유
9	내압시험장치	내압시험	보유 또는 활용
10	기밀시험장치	기밀시험	보유 또는 활용
11	초음파두께측정기	용기 두께 검사	보유 또는 활용
12	안전밸브 검사장비	안전밸브 검사	보유 또는 활용

※ '보유'라 함은 검사기관에서 설비 및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활용'이라 함은 검사기관에서 비파괴 검사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의 조직 관리

가. 검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 분담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사와 관련된 자료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칙과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검사 업무관리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검사 업무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마.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검사 인력의 부재 시에도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4]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44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4조의2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4조의2 제6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4조의2 제6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4조의2 제6항제4호	경고 또는 보완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5]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등 (제22조제2항 관련)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일반규정 및 용어 및 위험물 목록	2
위험물 분류	1
위험물 용기·포장요건, 용기·포장의 제조 및 시험, 위탁 절차, 표시·표찰 및 운송서류	2
위험물 적재 및 격리, 위험물 포장·운송	2
사고시 특별규정 및 화재예방조치 등	1
총계	8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표 6]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23조제2항 관련)

1. 교육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 것
 - 가.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
 - 나.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단위시설의 기준
 - 가.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일 것
 - 라.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추어 것
 - 가. TV, VTR, 컴퓨터,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 시청각 교재
 - 나. 국제철도협력기구(OTIF, OSJD 등),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하는 위험물 관련 지침서와 교육자료 등
4. 교육전담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할 것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위험물 포장·적재·관리·운송 등에 관한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나. 선박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위험물 포장·적재·관리·운송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44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4조의3 제5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법 제44조의3 제5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44조의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4조의3 제5항제3호	경 고 또 는 보완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위험물 용기 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회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위험물용기	종 류		
	재 질		
	제조번호	수 량	
검사종류	☐ 초기 검사 ☐ 정기 검사 ☐ 수시 검사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 자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검사 계획서 2. 검사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탱크용량, 설계압력, 시험압력 등), 도면 및 검사 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3제8호에 해당하는 사고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 기관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검사	→	위험물 용기 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위험물 용기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위험물 용기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위험물 용기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험물 용기 검사 합격증명서

위험물용기	종 류	
	재 질	
	제 조 번 호	
	검 사 수 량	
제조사	성 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비고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화차에 고정된 용기(탱크)의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위험물 포장 · 용기 검사기관장

직인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 소재지)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검사 분야	☐ 화산 운송용 용기검사 ☐ 유류 운송용 용기검사	

「철도안전법」 제44조2제5항 및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0조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검사업무규정 및 기관운영규정 4. 운영계획서 5. 검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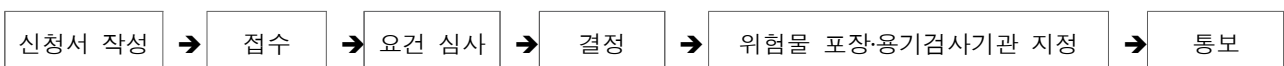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5. 검사 분야:

위 검사기관을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3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위험물취급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교육 분야	연간 교육 정원
	위험물취급안전 교육	

「철도안전법」 제44조2제2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 및 운영규정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3. 위험물취급 안전교육 계획서(교육방법, 평가방법 등 포함) 4. 교육전담요원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5.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위험물취급안전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법인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지정조건: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2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 전문교육기관을 위험물취급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 ----- ----- -----.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u>별표와 같다.</u>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	----- ----- ----- <u>별표 1과</u> --.
<u><신 설></u>		제6조의2(위험물 용기 검사 등)		①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이하 “위험물용기”라 한다.)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u>별표 2에 따른 검사주기에 따라 위험물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u>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8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안전법」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검사결과 용기의 안전성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험
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용기검사 계획서

2. 검사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탱크용량, 설계압력, 시험압
력 등),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1조의3제8호에 해당하는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
다.)

4.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부품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 계

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검사 대상 용기의 종류 및 수량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안전관리계획

4. 검사에 사용될 장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기 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서 정한 용기등의 검사 방법을 따른다.

1. 외관검사 : 용기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주름 등의 발생여부, 부착 부품의 적정설치 여부 및 가공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2. 용기 두께 검사 : 용기의 두께가 별표 2에서 정한 설계압력, 허용응력, 용접작업 검사

<신 설>

방법 계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계산된 값이 6mm 이하이면 6mm로 한다.) 이상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3. 수압시험 검사 : 용기에 물이나 공기 등의 기체를 이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압력을 10분간 가하여 누설이나 팽창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4.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 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를 통하여 용기의 취약개소의 균열 등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⑤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의 면제) 위험물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
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의
분류에 따라 별지 도식의 표찰
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신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
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
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
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
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
우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

----- 별표 1-----
----- 표찰-----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
관의 지정 등) ① 「철도안전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위
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은 다
음 각 호의 인증 또는 지정 등
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 90
00 표준시리즈)의 인증을 받
은 기관

3.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
을 받은 기관

4.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
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② 「철도안전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
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을 받은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3. 검사업무규정 및 기관운영규정

4. 운영계획서

5. 검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 · 학력 ·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표 3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 · 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 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험물 포장 · 용기

<신 설>

<신 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기관명·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철도안전법」 제44조의2제7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①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매2년마다 8시간 이상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의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철도안전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한 교육생에게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3. 교육훈련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4.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전부를 면제한다.

1. 「철도안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종사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신 설>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

5.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물안전운송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제23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철도안전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운영규정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3. 위험물취급 안전교육 계획서

4. 교육전담요원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5.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
요

② 「철도안전법」 제44조의3
제4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
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
급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
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으로부터 위험취급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기
관명·대표자·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신 설>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철도안전법」 제44조의3제6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890